#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 A Study on the Traits of Multicultural Society of Rural Areas in Korea

임형백** · 이성우*** · 강동우**** · 김미영*****
Hyung Baek Lim · Seong Woo Lee
Dong Woo Kang · Mi Young Kim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tudy multicultural society of rural areas in Korea. USA immigration law permits permanent settlement but Korea immigration law prohibits permanent settlement. USA adopted the territorial principle but Korea adopted the personal(nationality) principle. So a large number of people immigrated and settled in USA and mass(collective) immigrants is usual in USA. But foreign workers(temporary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women(individual immigrants) is usual in Korea. According to the positive law, foreign workers cannot settle down in Korea. So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mmigrants are main cause of multicultural society in rural areas in Korea. This is the particularity of multicultural society in rural areas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according to areas and residents. Many peoples see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 이 논문은 2009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성결대학교 교수. e-mail: emperor10131@hotmail.com
*** 서울대학교 교수. e-mail: seonglee@snu.ac.kr
**** 서울대학교 대학원. e-mail: dwkang1982@gmail.com
***** 서울대학교 대학원. e-mail: dearmaemee@gmail.com

point of view of human rights and welfare.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ee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point of view of economic and policy.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이민(immigration), 정책(policy)

# 1.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서구의 사회학은 민족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었었다. 왜냐하면 민족 문제가 그 사회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의 사회학은 민족을 전혀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인종(race)이나 인종집단(ethnic group)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인종이나 인종집단들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신용하, 1985:13).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민족' 이외에 '인종'이라는 화두가 대두되는 상황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으로 단결하여 이웃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일국가를 발전시켜 온 민족"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노동자(단기거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도 다문화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율은 35%를 넘어섰다.[1] 2009년 6월 기준으로 함평, 보은, 임실, 단양은 40%를 넘어섰다. 이제는 '다문화' 또는 '다문화

주의'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모형을 혼돈하면서, 다문화모형은 옳은 것이고 동화모형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한국과 서구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결여된 채, 피상적으로 서구의 다문화사회의 이론과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다. 또 인권적·복지적 시각은 강조되는 반면, 경제적·정책적 시각은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임형백, 2009c). 또 현재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장미혜 외 4인, 2008). 서구국가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필요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도 이들을 받아들인 민족국가의 시민으로서는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통합을 경험하게 된다(Parrennas, 2009).

서구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개 공식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영·미 계통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규제를 통하여,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로의 이민은 경제적 조건 등에서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가족단위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영주자격을 받아 영구적 사회구성원이 된다.

반면 한국은 '정주허용을 금지'하면서 공식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가족단위의 이민은 극히 제한적이며, 서구국가의 이민자 개념에 해당하는 영구적 사회구성원인 영주자격자는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2]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원인은 도

1) 통상 통계상에서 한국의 국제결혼률은 남·여배우자 관계없이 국제결혼을 의미하는 반면, 농촌의 국제결혼률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의 비율을 의미한다.

시지역에서는 단기거주노동자이고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3]인데, 단기거주노동자는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다문화정책[4] 보다는 외국인정책의 대상자이고, 결혼이민자는 개인단위의 이민이며 한국의 개별가족의 구성원의로의 편입이다. 즉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영・미 계통의 국가와 다르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인권적・복지적 시각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경제적・정책적 시각이 결여된 인권적・복지적 시각의 접근은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다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법적 근거, 그리고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채, 인권적・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은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첫째, 한국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사회의 차이를 고찰하고, 둘째, 한국농촌지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고찰하고, 셋째, 이를 통하여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층적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

2) 한국은 단기거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가 약 80-90만 명, 결혼이민자가 약15만 명, 귀화인이 약 2만 명 등 국내거주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규모로는 100만 명이 넘었지만, 서구국가의 이민자 개념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자인 귀화인은 2만 명도 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도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신분이다. 그렇다보니 100만 명이라는 규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의 이슈화가 되지만, 실제 정책의제 선정・채택 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3)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법무부(2009.06)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12만6천여 명 가운데 여성이 11만여 명으로 남성 1만5천여 명의 7배에 달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취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결혼이민자의 통계는 다른 중앙부처의 통계(약 15만에서 17만여 명)보다는 적은 경향이 있다.

4)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은 다르다. 또 다수의 중앙부처가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 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한국과 서구국가의 다문화사회의 차이

### 2.1. 인식론적 차이

우리는 민족주의를 유서깊은 사조로 인식하고 불변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서구의 민족주의(nationalism)는 근대의 산물이다. 특히 서구의 민족주의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만개한 18세기 이후의 산물이다. 18세기가 되기까지 민족에 기초하여 국가와 영토가 규정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시국가, 봉토・영주・왕조국가・종교단체・교파 등에 묶여 있었다. 민족국가의 개념은 역사가 짧은 새로운 관념이며, 과거에는 이상적 국가형태로 서술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는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시대로 불리었다. 이후 남아메리카의 신생국들이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뒤 19세기 초엽에는 중부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중반기에는 남・동유럽으로 번져나갔다.

Anderson(1983)은 민족을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있고, Hobsbawm(1991) 역시 민족을 근대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도 19세기까지 대다수의 민족에게는 민족의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Bruno(1993)는 특히 현대 민족주의는 유럽 왕조의 독재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Edensor(2008)는 일련의 상징과 역사가 모아져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 과정이 대중문화에 의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상징들이 끊임없이 발명되고 유포되면서 대중의 정서적 애착에 호소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Edensor의 주장은 '오랜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혈통의 순수성이 민족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우리의 관념에 반한다.

학계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용어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우리 한국의 민족의식도 일제지배하에서 강화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민족이 근대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실재하던 언어 · 문화 공동체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맞추어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communautés imaginées)'인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학계의 논쟁은 차지하고 우리는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여 왔고 이는 우리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과 서구의 민족주의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민족주의는 가부장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기욱(2009)은 "단일민족 의식이 한국에 배타성과 편협성을 가져왔고, 사상적 빈곤을 낳았으며, 정치적 독재를 도왔다"고까지 주장하였다. Hobsbawm(1991)도 주된 관심을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민족주의에 두고 있으면서, 한국, 일본, 중국의 동양삼국을 예외적인 민족주의의 소유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정체성에 대하여 서구와는 다른 인식론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는 마치 법률의 전통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차이와 유사하다. 속인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인식구조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동질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거부감과 배제성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표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구분 | 속인주의 | 속지주의 |
|---|---|---|
| 의미 |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
| 국적 |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국적에 따라 결정<br>-국적자의 자녀, 배우자 등 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국적 허용 |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결정<br>-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자국 내 출생자의 국적 취득 허용 |
| 예 |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br>-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br>-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으면, 인종, 민족, 혈통, 출신에 관계없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 |
| 적용국가 | 한국, 독일, 일본, 대부분의 서구 국가 | 프랑스, 미국 |

자료: 임형백, 2009a: 165.

## 2.2. 실정법[5](positive law)의 차이

한국은 '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주화 없는 단기인력제도와 속인주의적 전통의 고수는 우리와 큰 유사점을 가진 독일이 오랫동안 견지했던 외국인정책이었다. 서구 국가 중에서도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국가가 아니므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다루는 이민정책은 필요치 않았고, 단지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정책만 가질 뿐이라는 논리였다(이용일 2007:221-222).

반면 앵글로-색슨계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

5) 일상적인 의미로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하며, 제정법·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미국은 경제활성화에 이민자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신 미국[6]은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자격의 순위와 종류를 만들어 놓고, 매년 그 순위에 입국 비자를 줄 수 있는 Quota를 정해 놓는다. 순위나 Quota에 장애를 받지 않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 미성년자, 망명가,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이다(신경섭, 2008). 미국의 가족이민의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투자이민의 투자액수 하한선, 비이민 비자의 통장잔고증명 등이 이러한 예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 정주를 허용하며, 가족단위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정주허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외국인거주자는 100명에 이르지만, 서구국가의 이민자 개념에 해당하는 영구적 사회구성원인 영주자격자(귀화인)는 2만 명도 되지 않는다.

### 2.3. 다문화사회화의 원인의 차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이다. 실정법에서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이는 서구와는 다문화사회화의 원인부터 다르다.

우선 한국보다 앞서 다인종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자. 이들 국가들은 〈표 2〉처럼 다인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표 7〉과 같이 다른 인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한국의

6)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은 가족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Lotto 이민이라 불리우는 Diversity Visa Program의 4가지 방법뿐이다(신경섭, 2008).

다인종사회로의 진입 유형은 〈표 2〉에서 나타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2〉 인구의 국제이동의 원인을 기준으로 살펴본 다인종사회로의 진입 유형

| 유형 | 예 | 비고 |
|---|---|---|
| 이주노동(contract worker)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 | 독일 (사회통합적 다문화주의) | -1960년대 스페인,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출신의 노동자를 방문노동자(Gastarbeiter) 형식으로 초청<br>-1973년 방문노동자 정책을 포기했지만, 가족 초청 등의 형식에 의해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 집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백여만 명에 이름 |
| 이민(immigration)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 | 미국(다원적 다문화주의), 캐나다, 호주 |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전세계로부터 다양한 인종의 영구이민을 확대<br>-캐나다[7]는 영국문화에의 동화를 강요하다, 프랑스계의 퀘벡(Quebec)분리주의 등장 이후 '이중문화주의' 입장 견지<br>-호주도 1973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의 포기 이후, 비유럽이민자들이 급증하고, 특히 1988년과 1989년에는 전체인구증가의 54.4%를 이민인구가 차지 |
| 구식민지와의 포스트 식민주의 상황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 | 영국, 프랑스 (사회통합적 다문화주의) | -구식민지 국가 출신들이 이주<br>-프랑스 이민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이민자의 22%가 알제리 출신<br>-영국은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펴오다 1962년 이후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민으로 현재 영국 인구의 7.85%가 인종적 소수집단 |

주: 미국은 다원적 다문화주의,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통합적 다문화주의로 차이가 있음.
자료: 홍기원 외, 2006:8-9를 참고하여 작성.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여러 인종들의 혼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미국 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7) 한국에서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이다. 그러나 캐나다도 초기에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캐나다가 '이중문화주의'로 전환한 이유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퀘벡의 분리·독립 운동이 강력히 등장한 때문이다.

이때 와서야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동화가 당연시되었던 유럽계 이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미국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흑인, 동양인 그리고 유태인과 같은 타인종 이민자들은 예상치 못한 정도로(어떤 의미에서는 꽤 높은 수준으로) 동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Higham, 1984:157).

한국은 단일민족의 동질성에 새로운 집단이 이주해오면서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정주허용금지 원칙'에 의하여 대규모 이민이 아닌 단기거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통한 다문화사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구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차이가 있다.

즉 서구와 같은 가족단위의 이민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하는 데는 적어도 1세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대규모 이주를 통하여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과 같은 이민자집중거주지(ethnic enclave)를 형성하는 경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한다고 하여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평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소수의 가족 또는 민족, 인종 집단에게 다수의 문화를 강제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의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을 지칭하는 태도로 1957년 스위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를 전후해 서구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민족사회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공식적으로 상호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중시한다(홍기원, 2006:6-22). 다문화주의란 정치체와 민족의 집단적 거주지역(homeland)의 경계를 일치시킬 것, 하나의 정치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인종적(ethnic) 그룹이나 피

차별집단의 독자성을 공인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이순태, 2007:53).

한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문화주의를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퀘벡 신드롬(Quebec syndrome)'이나 '유고슬라비아 신드롬(Yugoslav syndrome)'이라고 불리는 내부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Glazer, 2009:90).

그러나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인종, 또는 세대 간 갈등과 성역할의 차이 등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정의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승용, 2004). 다문화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은, 그 다수가 〈표 3〉의 세 가지 기본전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고 있다.

〈표 3〉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

| 입장 | 학자 |
|---|---|
| 자유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의 문화의 중요성<br>(ethnic group의 문화를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Kymlicka(1989),<br>Margalit and Raz(1990) |
| 집단적 정체성의 적절한 승인의 필요성 | Taylor(1994) |
|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동포의식의 필요성 | Walzer(1990) |

자료: 임형백, 2009a: 171.

# 3.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 3.1. 결혼이민자[8]에 의한 다문화사회화

현재 한국은 단기거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가 약 80~90만 명, 결혼이민자가 약 17만 명, 귀화인이 약 2만 명 등 국내거주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9] 이들의 존재와 규모는 우리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학계,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는 이들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도 다문화사회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100만 명 중에서 (서구국가의 이민에 해당하는)영구적 사회구성원인 영주자격자, 즉 귀화인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와 정책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100만 명이라는 존재와 수적규모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 정책의제 선정과 채택 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배타적 ·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다.

---

8) 본 논문에서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만을 다루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결혼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 남편의 비중이 각각 71.5%와 28.5%를 차지한다(통계청, 각년도). 학계에서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결혼 이민자'(한건수, 2006)보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 외 2인, 2005; 김민정 외 3인, 2006; 이주연 · 김성일, 2006)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한편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개 부처에서 공동발간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외국남성과 한국여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9) 다문화사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통계수치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간 측정방법의 차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표 4〉 다문화정책대상에 따른 정책 차별화

| 지역 | 대상 | 국적 | 정책 | 비고 |
|---|---|---|---|---|
| 도시지역 | 단기거주노동자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원인) | 외국인 | 외국인 정책 | -단기거주 후 출신국가로 돌아감<br>-단,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정책수단(policy means)과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면에서 다문화주의모형과 유사 |
| | 결혼이민자 | 한국인 | 다문화 정책 (동화모형) | 한국의 개별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 |
| | 귀화인 | 한국인 |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모형) |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br>-서구국가의 이민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자 |
| 농촌지역 | 단기거주노동자 | 외국인 | 외국인 정책 | -단기거주 후 출신국가로 돌아감<br>-단,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정책수단(policy means)과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면에서 다문화주의모형과 유사 |
| | 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원인) | 한국인 | 다문화 정책 (동화모형) | 한국의 개별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 |
| | 귀화인 | 한국인 |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모형) |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br>-서구국가의 이민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자 |

자료: 임형백, 2009b: 69.

### 3.2. 서구에서는 문화적 병합, 한국농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원인

서구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적인 사회 구성원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amalgamation)의 대상일 뿐이다(Kymlicka and He, 2005). 미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같은 인종내의 결혼과 다른 인종간의 결혼이 급격하게 다른 비율을 가진다는 것이다(Taylor, 2006:205). 유럽계 민족 그룹들 간의 결혼비율은 매우 높다(Lieberson and Waters, 1998). 전통적으로 타민족과의 결혼을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꺼리고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낮은 타민족과의 결혼비율을 보여 온 유태인 그룹도 현재는 과반수가 넘는 혼인이 민족 외의 배우자와 이루어지고 있다(Glazer, 2009:200).

더구나, 격한 미국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문화변용(acculturation)과 동화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민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과는 관계없이 이러한 생각은 미국에 정착한지 오래된 사람들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민에 동정적인 자유주의자들 모두 동화의 필연성과 바람직함에 모두 공감했던 것이다(Glazer, 2009:198).

그러나, 한국농촌에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사회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혼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와 정책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100만 명이라는 존재와 수적규모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 정책의제 선정과 채택 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배타적 ·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임형백, 2009c).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부 부유한 노년층미국인들과 동남아여성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러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적인 사회 구성원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amalgamation)의 대상일 뿐이므로 다문화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다. 반면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사회화의 가장 큰 원인이며,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주 대상자이다.

### 3.3. 빈곤과 연계된 이주 경로

한국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농촌'이라는 등식의 붕괴로 설명되는 농촌의 현재적 기능의 약화와, 도 · 농 통합시의 출현과 같은 공간적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지

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농촌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농촌총각이 결혼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다. 2005년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13.6%이었지만, 농촌의 국제결혼율은 35.7%에 이르고, 한국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적 성장이 뒤진 국가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한국농촌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과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경우에는, 농촌총각만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농촌만큼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지 않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젊은층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총각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인구전출이 이루어지는 농촌에서는 배우자의 대상이 적어지고, 반면 인구전입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교제기간이 늦춰짐에 따라 사회 전체의 결혼연령도 상승한다(임형백, 2007a: 478).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룬다.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총각과 중국의 조선족 처녀들과의 결혼이 그 시초가 되었다. 조선족과의 결혼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급증하여 1999년까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조선족여성들이 4만 명을 넘게 되었다(홍기혜, 2000).

이후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결혼·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결혼과정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1998년의 국적법의 개정이다. 1998년 이전에는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외국인 신부는 혼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

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녀는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을 유지한 후에야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10] 둘째는 조선족 여성들의 대안으로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지역여성들과의 결혼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말을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외모가 다르다는(인종이 다르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함) '단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선족과 달리)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었다(윤형숙, 2004). 199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혼인건수는 4,349건에서 6,444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663건에서 19,214건으로 29배 증가하였다(김민정 외 3인, 2006).

이는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결혼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연결된 결혼이 이주경로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4.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층적 접근

### 4.1. 장기적 지향점의 설정

한국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는 오히려 다민족(multinational)사회나 복합인종(polye-

10) 결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신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다. 국적취득 신청 때에도 남편이 보증을 서주어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권도 남편에게 있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결혼이민자는 체류 자격을 상실한다. 결혼이민자의 가정 폭력 피해가 입증되면, 귀화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은 입증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결혼이민자는 '강제퇴거' 위험에 직면한다.

thnique)사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임형백, 2009a: 182).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일된 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국가에서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인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사회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앞의 〈표 2〉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서구국가와 비교하여 다인종사회로의 진입 유형도 다르다. 여기에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 현재 각 부서별 또는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또는 운동의 체계적인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국가의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표 5〉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표 5〉의 다문화주의 유형의 왼쪽에 가까울 뿐, 어느 것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지향점부터 설정하여야 한다.

〈표 5〉 다문화주의의 유형

| 약 ← | 문화적 다양성의 인지정도와 그 허용도 | | | | → 강 |
|---|---|---|---|---|---|
| 상징적 다문화주의 | 리버럴 다문화주의 | 코퍼레이트 다문화주의 | 연방제 다문화주의 | 분단적 다문화주의 | 분리·독립적 다문화주의 |

자료: 이순태, 2007:67.

## 4.2. 다문화정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일부에서는 노동력의 부족을 근거로 적극적 이민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2008년 11월 한국의 출산율이 1.9명으로 낮아지면서 한국은 2018년에 인구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300년 뒤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한다.[11]

그러나 일단 서구국가와 같은 형태의 공식 이민정책을 채택하면 이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현재 남한에서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저출산은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20-30년 후 신규노동력이 부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임형백, 2007b: 328). 따라서 2020년 이후 통일[12]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남한의 저출산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민정책의 채택은 신중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 관리할 기관은 필요하다. 현재에도 정부의 각 부처간에도 입장이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법무부는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중앙부처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외국인전담 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6〉 외국인 유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구분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외국인근로자 | 노동부, 중소기업청, 법무부 등 |
| 외국국적동포 |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
| 유학생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
| 난민 | UN, 법무부 등 |
| 관광, 연예인 |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
| 투자자, 주재원 | 산업자원부, 법무부 등 |

자료: 이순태, 2007:19.

11) 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OECD평균인 78.9세 보다 높은 79.1세이다(OECD, 2008.06).

12) 임형백(2005)은 북한의 평균연령을 추산하여 혁명3세대가 정권을 장악하는 2020년경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8)은 한국이 2025년 통일 또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법정배분사업이 아니라 재정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다. 상위차원의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오윤자 & 라휘문, 2009). 따라서 상위차원의 중앙부처간에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장기적 지향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총괄할 조정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차원에서의 선언적 의미는 현실성이 결여된다.

### 4.3. 인권적·복지적 접근 vs 경제적·정책적 접근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인권적·복지적 시각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적·복지적 시각의 접근과 동시에, 경제적·정책적 시각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이민정책'과 기타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이라는 대립은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첫째 인권적·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은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인권적·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임형백, 2009c).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다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인권적·복지적 접근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다문화사회화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Martiniello(2002:153)는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민족·문

화집단에 소속된다고 주장하는 개인과 집단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동질적 국민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규격화된 대중문화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공존할 것이다. 다음 세기에도 이민은 계속될 것이며, 그 도식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는 계속해서 다양화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은 이미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위격차가 생긴다. 국내 외국인 대다수가 아시아권 출신이라는 점은 이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의하여 유인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중 미국 · 유럽 · 일본 등 선진국 출신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르는 반면,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도 중국 국적 보유자가 42.4%였고 베트남(6.9%), 필리핀(6.5%) 등이 뒤를 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한국이 부담하여야 할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적 · 복지적 시각의 접근과 더불어 경제적 · 정책적 시각과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미 현재에도 다문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부처간의 유사 · 중복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감성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 4.4. 적절한 정책의 채택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 포섭/배제모형(differentialist model)",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Castles and Miller, 1998). 차별적 포섭/배제모형이나 동화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

문화주의모형에 입각한 국가에서는 민족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Martiniello, 2002:72-93). 현재 한국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모형을 혼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의 〈표 4〉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다문화사회화는 서구국가와는 달리 단기거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한편 각 국가는 〈표 7〉에서 나타난 정책 중 한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다른 정책을 일정정도 수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혼혈인의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혼혈인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군대에도 갈 수 없었다.[13] 이는 차별적 포섭/배제 모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사회에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니 권리도 요구하지 말라는 논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13) 1972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2006년에 이르러 이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원할 때에는 입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7〉 한 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

| 유형 | 내용 | 비고 |
|---|---|---|
| 차별적 포섭/ 배제모형 | -국가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이민)을 받아들이고, 복지 및 여러 정치,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br>-즉 이주집단에 따라서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br>-대부분의 이주민은 '사회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겨질 뿐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반면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적응 내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 -한국, 일본, 독일 등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국가 |
| 동화모형 | -이민자(외국인)가 출신국의 언어 · 문화 ·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br>-주류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며,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를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프랑스<br>-1960년대까지의 미국[14]의 "용광로(Melting Pot) 정책" |
| 다문화주의 모형[15] |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br>-예) Salad Bowl, Ethnic Mosaic, Rainbow Coalition | -영 · 미 계통 국가 |

자료: 김이선 외 2인, 2006:129-130; 김은미 · 김지현, 2008:9; Castles and Miller, 1998: 171-201을 참고하여 작성.

14) 미국에서 동화(assimilation)는 과거의 개념도 아니고 악한 개념도 아니다. 그러나 동화는 처음부터 당연시되거나(유럽계 이민에 대해서),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것(유럽계 이외의 이민에 대해서)으로 믿어져 왔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사회 속에 포용하는데 실패했고, 이로 인하여 동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반대가 강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흑인들의 문화적 전통 보다는 그들의 인종적 · 육체적 특징에 기인한다(Glazer, 2009).

15) 다문화주의모형은 다시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화할 수 있다(설동훈, 2005:3).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과

한국은 '정주허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단기거주노동자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포섭/배제모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차별적 포섭/배제모형을 적용하지만, 단기거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부분적 차별적 포섭/배제모형을 적용한다. 한편 귀화자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모형,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동화모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다문화주의모형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국제결혼이 빈곤과 연계된 이주경로로써 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동화모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더구나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의 약 20%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임형백, 2007a: 482), 결혼이민자가정의 절반 이상(52.9%)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10).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이외의 한국인들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친밀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인, 2006).

이미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상당수는 한글이해능력이 부족해 학교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에서는 외모로 인한 따돌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06). 또 이들은 가난, 언어장벽, 소외의 3중고를 겪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10).

---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라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김은미·김지현, 2008:10).

〈표 8〉 외국인 정책의 대상과 과제의 개관

| 정책목표 | 정책목표 대상 | 세부추진과제 |
|---|---|---|
| 외국인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 / 우수외국인력유치 치원 | 결혼이민자 · 외국인 여성 · 외국인의 자녀 | ①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 지원<br>② 인신매매 · 성매매 근절<br>③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

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정책대상은 외국인과 국민으로 대별되며, 외국인은 사회구성원 자격취득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함(단 외국인여성 및 외국인의 자녀는 정책 접근방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그룹과 병치)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05.26:8의 일부를 발췌.

## 4.5. 사회적 비용의 감소

최근에는 조선족 이외의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외모에서부터 확연히 구별되는 혼혈아의 탄생이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이는 경제적 구별(계급, 수입, 직업 등)에 외모라는 또 하나의 구별적 변인(distinctive variable)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격차가 완화되더라도 융화되기 어려운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즉 농촌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외모(새로운 인종)라는 새로운 구별적 변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임형백, 2007a: 488).

이들이 앞으로 20~30년 뒤 한국의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사회 내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기는 다문화 간 갈등은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O'Brien, 1996:1070).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장미혜 외 4인, 2008). 우리사회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인종적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포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다문화적 포용성을 지난 사회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나 자원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전성우, 1993; Phillips, 2007; van der Maesen, 2005).

나아가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시각을 좀 달리하면, 오히려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이들이 보다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동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2개국어를 구사하는(bilingual)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하여 이들을 한국과 출신국가를 연결하는 동북아시대의 국가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만하다.

## 5. 결 론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서구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인식론적인 면에서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 실정법에서는 정주허용금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원인과 다문화사회의 유형에서는 서구국가에서 유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는 서구국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한국농촌은 결혼이민자에 의하여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다보니 결혼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와 정책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80~90만의 단기거주노동자와 17만여 명의 결혼이민자, 그리고 2만 여 명의 귀화인 등 100만 명이라는 존재와 수적규모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 정책의제 선정과 채택 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배타적・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다. 둘째, 서구국가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일 뿐이나 한국농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빈곤과 연계된 이주경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에 대하여는 서구국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장기적 지향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무부 이외의 중앙부처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장기적인 지향점에 대한 통일이 없이, 각 중앙부처별로 사안에 따른 유사・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기구(또는 기관)이 필요하다. 셋째는 인권적・복지적 접근과 경제적・정책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 인권적・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방법은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 법・제도적 근거,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우호적이면서도 단기거주노동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인식도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서구국가와 다른 다문화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향점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문화주의 모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듯하다. 다섯

째,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서국국가에서 이미 경험한 다문화 간 갈등은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농촌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다문화사회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산권의 행사, 친권의 행사, 모국으로의 귀환 등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내지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미리 법적·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발표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개 중앙부처 공동발간.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김은미, & 김지현. (2008). 다인종 · 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1-35.

김이선,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황정미, & 이진영. (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네이선 글레이저(Nathan Glazer). (2009).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종남 · 최현미 옮김. 서울: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Rjacel Salazar Parrennas). (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ch Martiniello).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서울: 한울.

법무부. (2009.06).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브루노 레온(Bruno Leone). (1993). *민족주의*. 김호성 역. 서울: 인간사랑.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3-23.

설동훈. (2009).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 현재와 미래.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자료집*, 23-43.

설동훈, 김현미, &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신경섭. (2008). *미국이민법*. 서울: 새로운사람들.

신용하. (1985). 민족 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 문학과지성사, 13-58.

오윤자, 라휘문, & 외 3인.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발전방안*. 공개세미나자료집.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05.26).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자료*.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321-349.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92*, 219-254.

이주연, & 김성일.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의 지역사회와의 갈등양상 및 통합방향. *2006 전국사회학대회 자료집*, 241-243.

임형백. (2005). 통일 이후에 대비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시론. *안양학 논총*, *5*, 195-209.

임형백. (2007a).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4*(2), 471-491.

임형백. (2007b).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에 의한 아시아 공간구조변화와 안양시의 대응전략. *안양학논총*, *7*, 313-334.

임형백.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과제: 다문화주의모형과 동화모형의 갈등. *경인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1-27.

임형백. (2009a).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2*(1), 161-185.

임형백. (2009b).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1), 51-74.

임형백. (2009c).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접근. *2009 전기사회학대회 미발간자료집*.

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 & 조소영.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팀 에덴서(Tim Edensor). (2008).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박성일 옮김. 서울: 이후.

폴 테일러(Paul C. Taylor). (2006). *인종: 철학적 입문*. 강준호 옮김. 서울: 서광사.

한건수. (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행정자치부. (2005).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참고자료*.

홍기원, 백영경, 노명우, 이재은, & 정보원. (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Anderson, B. (1983). *Theory of Nationalism an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Higham, J. (1984). *Send These To Me: Immigrations in Urban America, rev.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obsbawn, E. (1991).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Kymlicka, W (ed.). (2005a).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Kymlicka, W (ed.). (2005b).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Kymlicka, W., & He B (ed.). (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Lieberson, S., & Waters, M. C. (1988). *From Many Strands: Ethnic and Racial Groups in Comtemporary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McConnell, C. R., Brue, S. L., & Macpherson, D. A. (2003).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6th ed.)*. New York: McGraw-Hill.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5 Project. (www.dni.gov/nic/NIC_2025_project.html)

OECD. (2008.06). *OECD Health Data 2008*. Paris: OECD.

Phillips, A. (2007).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Piper, N., & Roces M. (2003). Introduction: Marriage a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N. Piper and M. Roces (eds.).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Taylor, C.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C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일: 2009. 10. 10
1차수정일: 2009. 11. 23
2차수정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8